

제245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5 월 8 일

여 수 시 장

김기영



여수시 조례 제2202호

붙임 여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함”을 “규정하고 폐기물 발생 억제 및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협약의 체결 등) ① 시장은 폐기물의 발생 억제, 감량, 자원화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 제16조에 따라 관할구역에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고자할 경우에는 협약당사자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협약목적, 협약내용, 협약당사자의 역할, 협약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협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영 제8조”를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5항) 중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를 “2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로 한다.

1.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

2.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설립된 기관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① 시장 또는 제9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 받은 자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
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유를 말한다.

1. 재난 등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폐기물처리시설
의 반입 시간, 출근시간대 혼잡 등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하여
시장이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
미만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할 수 있는 경우

가. 3인이 탑승하기 어려운 차량을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재활용 폐
기물 포함)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나. 일반적인 수집·운반과 다른 형태로 작업(가로청소, 민원처리
기동반 등이 작업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경우

다. 폐기물 자동상차장치나 집게장치 등 특수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및 작업환경개선, 작업 특성 및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는 경우
라. 수거 완료된 생활폐기물을 차량에 적재하고 폐기물처리시설로
운반 처리하는 경우

3. 그 밖에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
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5조제2항 중 “폐기물은 「자원순환기본법」 제3조”를 “폐기물은 「순
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조”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폐기물은 「자원순환기본법」 제3조”를 “폐기물은 「순
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조”로 한다.

제21조제6항 중 “판매소 지정이”를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처분 대상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
하여야 하며 판매소 지정이”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는”을 “각
호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1.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설
립된 기관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안)

대형폐기물품목 및 수수료기준 (제2조, 제11조, 제23조 관련)

품 명	규 격	수수료(원)
냉 장 고	800ℓ 이상	10,000
	500ℓ 이상	8,000
	300ℓ 이상	6,000
	300ℓ 미만	4,000
	업소용	15,000
텔 레 비 전	42인치 이상	5,000
	42인치 미만	3,000
세 탁 기, 건 조 기	모든 규격	4,000
에 어 컨	264㎡ 이상	8,000
	66㎡ 이상	5,000
	66㎡ 미만	3,000
가스(전기)오븐렌지	높이1m 이상	4,000
	높이1m 미만	2,000
전 자 레 인 지	높이1m 이상	4,000
	높이1m 미만	2,000
탈 수 기	모든 규격	2,000
공기청정기	모든 규격	2,000
장 농 (1쪽당)	폭 120cm 초과	15,000
	폭 90cm 초과~120cm 이하	10,000
	폭 90cm 이하	8,000
소 파	대형 6인용	8,000
	대형 4인용	6,000
	3인용	5,000
	2인용	4,000
	1인용(개당)	2,000
책 상	양수, 대형	5,000
	편수, 소형	4,000
	컴퓨터책상	2,000
식 탁	6인용 이상	5,000
	6인용 미만	4,000
식 탁 (대리석)	6인용 이상	10,000
	6인용 미만	8,000
피 아 노	그 랜 드	15,000
	업 라이트	10,000
	디지털	5,000
서 랫 장	5단 이상	4,000
	4단 이하	2,000
신 발 장	높이1m 이상	3,000
	높이1m 미만	2,000
문 갑	모든 규격	2,000
화 장 대	모든 규격	3,000
장 식 대	90cm×180cm 이상	7,000
	90cm×180cm 미만	5,000

품 명	규 격	수수료(원)
침 대	2인용 이상	15,000
	1인용	10,000
돌 침 대	2인용(받침 별도) 이상	20,000
	1인용(받침 별도)	15,000
돌 침대 받침	2인용(돌침대 별도) 이상	20,000
	1인용(돌침대 별도)	10,000
매 트 리 스	2인용 이상	8,000
	1인용	5,000
유 아 용 침 대	개 당	3,000
어 린 이 2층 침 대	개 당	20,000
케 비 닷	대형(일반형)	6,000
	소형(이중캐비닛)	4,000
오 디 오	대 형	15,000
	중 형	10,000
	소 형	5,000
스 피 커	대형(높이 혹은 너비 1m 이상)	5,000
	소형(높이 혹은 너비 1m 미만)	2,000
컴 퓨 터	본체, 모니터, 프린터	각 2,000
프 린 터 기 (팩시밀리)	모든 규격	3,000
난 로	대형	4,000
	소형	2,000
선 풍 기	대 형	3,000
	소 형	2,000
밥 상	6인 이상	3,000
	6인 미만	2,000
쌩 크 대	가로 120cm 이상	5,000
	가로 120cm 미만	3,000
찬 장	가로 120cm 이상	5,000
	가로 120cm 미만	3,000
의 자	안마의자	15,000
	대형(사무용 회전의자)	3,000
	중형(식탁의자)	2,000
	소형(등받이가 없는 의자)	1,000
옷 걸 이	모든 규격	2,000
쌀 통	모든 규격	3,000
유 모 차	모든 규격	2,000
세 면 대	모든 규격	4,000
변 기 통	모든 규격	3,000
벽 시 계	대 형	2,000
	소 형	1,000
재 봉 틀	모든 규격	2,000
정 화 조	10인용 이상	15,000
	10인용 미만	10,000

품 명	규 격	수수료(원)
가 방	골프가방	3,000
	가로 50cm 이상	3,000
	가로 50cm 미만	2,000
욕실수건함	개 당	2,000
런닝머신 싸이클	개 당	10,000
칸막이판넬 (파티션)	개 당	2,000
자 판 기	대형(1m 이상)	20,000
	소형(1m 미만)	10,000
금 고	대 형	15,000
	소 형	10,000
세 단 기	모든 규격	5,000
식기건조기	모든 규격	2,000
식기세척기	모든 규격	3,000
청 소 기	개 당	2,000
가습기, 제습기	개 당	2,000
전기밥솥(통)	개 당	2,000
고 무 통	모든 규격	1,000
다 리 미 판	모든 규격	1,000
비 데	모든 규격	1,000
그네, 목마, 유아용자동차	모든 규격	2,000
유아용카시트	모든 규격	2,000
항아리 및 화분	50cm 초과	3,000
	50cm 이하	2,000
돛자리, 대자리	1개당	3,000
화 환	모든 규격	2,000
병 풍	모든 규격	3,000
쓰 레 기 통	50ℓ 초과	3,000
	50ℓ 이하	2,000
블 라 인 드	1m 초과	4,000
	1m 이하	2,000
탁 자	폭 1m이상	4,000
	폭 1m미만	2,000

품 명	규 격	수수료(원)
은 풍 기	264㎡ 이상	8,000
	66㎡ 이상	5,000
	66㎡ 미만	3,000
오 락 기	29인치 이상	7,000
	25인치 이상	5,000
	25인치 미만	3,000
정 수 기	모든 규격	3,000
복 사 기	모든 규격	6,000
보 행 기	모든 규격	1,000
물 탱 크	1톤 이상	15,000
	1톤 미만	10,000
문 짝	현관문 및 베란다문	5,000
	방문(목재)	4,000
	창 문	3,000
개 집	모든 규격	3,000
간 판	대형(3㎡ 이상)	8,000
	소형(3㎡ 미만)	4,000
	에어풍선 간판	5,000
거 울 , 액 자	모든 규격	2,000
기 름 보 일 러	대 형	8,000
	중 형	5,000
	소 형	3,000
수 족 관	가로1m 이상	4,000
	가로1m 미만	2,000
책 장	1m 이상	8,000
	1m 미만	5,000
책 꾀 이	4단 이하	4,000
	2단 이하	2,000
판 유 리	60kg 이상	3,000
	60kg 미만	2,000
의 류 · 이 불	묶음단위 100ℓ 봉투기준	2,000
나 못 가 지	묶음단위 길이 1m×지름30cm	2,000
카 페 트	1묶음(20kg)	2,000
마 네 킹	개 당	3,000
육 조	개 당	4,000
아이스박스	대 형	2,000
	소 형	1,000
자 전 거	성 인 용	3,000
	어 린 이 용	2,000

품 명	규 격	수수료(원)
전기장판 (놀이매트포함)	일반(1인용) 일반(2인용) 옥(황토)(1인용) 옥(황토)(2인용)	2,000 3,000 3,000 5,000
조명기구	모든규격	2,000
평상	2m×2m 초과 2m×2m 이하	10,000 7,000
인형장난감류	100ℓ 당	2,000
텐트	1개당	2,000
천막	1개당	5,000
드럼통 및 페인트통 (건조페인트 6mm 미만)	10ℓ 초과 10ℓ 이하	3,000 2,000
팬히터	대형(1m 이상) 소형(1m 미만)	2,000 1,000
당구대	나무틀	20,000
탁구대	모든규격	7,000
미끄럼틀	유아용	5,000
소화기	20kg이하 6.5kg이하 2.5kg이하	5,000 3,000 1,000
기타	20kg 용량당	2,000
에어 프라이어	모든규격	2,000
음식물 처리기	모든규격	2,000
의류 관리기(스타일러 등)	모든규격	5,000
플라스틱장난감	1kg 당	1,000
파렛트	모든규격	3,000
예초기	모든규격	5,000
빨래 건조대	모든규격	2,000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u>규정함</u>을 목적으로 한다.</p> <p><u><신 설></u></p>	<p>제1조(목적) ----- ----- ----- <u>규정하고 폐기물 발생 억제 및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u>-----.</p> <p><u>제8조의2(협약의 체결 등) ① 시장은 폐기물의 발생 억제, 감량, 자원화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 제16조에 따라 관할구역에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u></p> <p><u>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고자할 경우에는 협약당사자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협약목적, 협약내용, 협약당사자의 역할, 협약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협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u></p> <p><u>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u></p>

제9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를 영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 구역의 범위를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②·③ (생략)

④ 제3항에 따른 대행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다음 달 5일까지 지급한다.

⑤ 대행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제2항에 따라 대행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대행자”라 한다)가 대행 업무를 지연하거나 게을리한 사실이 없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생활폐기물의 수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 -----

----- 다음 -----

1.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

2.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설립된 기관

②·③ (현행과 같음)

<삭 제>

④ ----- 2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집·운반 및 처리를 원활하게 수행한다고 판단되면 계속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 (생략)

<신설>

-----.

⑤ (현행 제6항과 같음)

제10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

반 관련 안전기준) ① 시장 또는 제9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 받은 자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재난 등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폐기물 처리시설의 반입 시간, 출근시간대 혼잡 등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하여 시장이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유로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 미만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할 수 있는 경우

가. 3인이 탑승하기 어려운 차량을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재활용 폐기물 포함)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나. 일반적인 수집·운반과 다른 형태로 작업(가로청소, 민원처리 기동반 등이 작업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경우

다. 폐기물 자동상차장치나 집게장치 등 특수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및 작업환경개선, 작업 특성 및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는 경우

라. 수거 완료된 생활폐기물을 차량에 적재하고 폐기물처리시설로 운반 처리하는 경우

3. 그 밖에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5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 ① (생략)

② 공사장생활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자원순환기본법」 제3조, 법 제13조의2 및 규칙 별표 5의3에 따라 종류별, 처리방법별로 분리·배출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16조(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처리) ① (생략)

②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자원순환기본법」 제3조, 법 제13조의2 및 규칙 별표 5의3에 따라 종류별, 처리방법별로 분리·배출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21조(판매소 변경지정) ① ~ ⑤ (생략)

⑥ 제5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취소한 날부터 1년간 판매소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제22조(종량제봉투등의 공급 업무 대행) ① 시장은 제19조제2항에 따라 종량제봉투등의 효율

제15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폐기물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조-----

-----.

제16조(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폐기물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조-----

-----.

제21조(판매소 변경지정)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처분 대상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판매소 지정이 ----.

제22조(종량제봉투등의 공급 업무 대행) ① -----

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종량제봉투등의 공급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99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종량제봉투등의 적정보관이 가능한 창고를 보유하고 읍·면·동별 지점 및 판매망을 갖춘 금융기관

2. 여수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3. (생략)

②·③ (생략)

----- 각 호에
해당하는 -----
-----.

1.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설립된 기관

<삭제>

2. (현행 제3호와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